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8. 10. 15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숙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: 2018년 10월 4일

3. 개정이유

본 조례 개정은 제22조, 제24조, 제25조의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, 서류제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품질성능평가시험(BMT) 평가방법 변경(안 제22조)

○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 변경(안 제24조)

○ 서류제출에 설치프로그램 추가(안 제25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을 현실성 있게 개선·보완하고, 사업자의 서류제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
-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을 도교육청이 직접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한 것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,

-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전 사업자의 제출서류와 검증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 것은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, 관리 감독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·관리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